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4가단9005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1. 7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선희

별지